

의안번호	2202792
의 퇴 인	박민규 의원
회 답 일	2024. 10. 11.
추 계 번호	24B2781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의 수립, 디지털 포용위원회 및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수행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7,000만원(연평균 5,4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안 제5조)	50	—	—	50	—	100	20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7조)	18	18	18	18	18	90	18
민간협의체 구성· 운영(안 제8조)	16	16	16	16	16	80	16
계	84	34	34	84	34	270	54

주: 1. 향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 단가의 증감, 실제 위원회 및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2.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3.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 없이 해당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제3항) 국가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함(제6항)	의무규정
2	안 제5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정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제1항)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제2항) 1. 디지털포용정책의 목표, 기본 방향 및 추진전략 2.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3.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4.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 5.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서비스·제품 등의 개발·보급 및 지원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상담 및 홍보 7. 제10조에 따른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의 결과 분석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9.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운용 11.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의무규정
3	안 제6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7조(디지털포용 위원회)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디지털포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둠(제1항)	의무규정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제4항에 따른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제5항)	
		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둠(제7항)	
		그 밖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8항)	
5	안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국가기관등은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참여 확대와 제2항에 따른 정책대상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국가기관등은 포용적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민간 분야의 자발적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6	안 제9조(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7	안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신규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에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자체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국가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이하 “개별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음(제2항) 1.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2.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사업 중 디지털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3. 그 밖에 디지털포용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재량규정
8	안 제11조(전문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기관·단체를 디지털포용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의 지원 2.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지원 3. 디지털포용 관련 국내외 동향의 조사 및 분석 4. 디지털포용 관련 법·제도 연구 5.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추진 및 조사·분석·평가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7. 제23조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운영 지원 8. 제2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디지털포용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임·위탁하는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능정보사회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서비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익하게 활용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활동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시책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제6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0	안 제13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함(제1항) 1. 디지털역량교육의 목표 및 추진전략 등 2.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교안(敎案)·교구(敎具)·교재의 개발·보급 3.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4. 디지털역량교육 전문인력의 발굴·지원 5. 디지털역량 향상에 필요한 지표개발·조사·보급 및 연구 6. 디지털역량교육 홍보 및 포상 등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과 시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디지털역량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3항)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 시책에 포함된 사회구성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량규정
11	안 제14조(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 및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주민의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센터(이하 “디지털역량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역량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원과 제13조에 따른 디지털역량교육에 관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디지털역량지원센터를 설치·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제3항)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2	안 제15조(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디지털역량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민간의 디지털역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 등의 개발·제작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13	안 제16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14	안 제17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경우 디지털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련 분야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음(제2항) 1. 일자리, 직무 등 취업·창업 관련 정보 2.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창업진로상담 3.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디지털 기반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 취업지원 프로그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를 위한 민간 기업의 자발적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3항)	의무규정
15	안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등 이용환경 보장 시책의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6	안 제19조(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국가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취약계층(이하 “장애인·고령자등”이라 한다)이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제1항) 1. 누리집 2.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3.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 단말기 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등의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종류·지침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제4항)	의무규정
17	안 제21조(지능정보 서비스 등의 접근성 점검·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기관등에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18	안 제22조(지능정보 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이하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음(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분야별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함(제2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9	안 제24조(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국가기관등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할 때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의 검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접근성 시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20	안 제25조(접근성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제품의 보급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이하 “접근성기술”이라 한다)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접근성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1.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능정보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사업자 2. 장애인·고령자·농어민 또는 저소득자 등을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 3. 제1항에 따른 접근성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지능정보사업자	
21	안 제26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음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3.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재량규정
22	안 제2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정부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지능정보사회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3	안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취약계층의 사용편의를 향상시킨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이하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라 한다)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1.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관련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화에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 표준과 관련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4	안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사업화(「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화를 말한다)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25	안 제30조(사회적기업의 지능정보화 사업 참여)	국가기관등은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음	재량규정
26	안 제31조(재원의 조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시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예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27	안 제32조(포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8	안 제33조(세제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3조에 따라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재량규정
29	안 제34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환·기술협력 등 국제협력 증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과 관련된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등의 국제기준의 수립에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디지털포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음(제3항) 1.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지원 2.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등의 지원 3.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 4. 민간부문의 국제협력 지원 5.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6. 그 밖에 국제협력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재량규정
30	안 제3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포용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실태조사)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2	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3	안 제13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	
4	안 제14조(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 및 지정)	—	
5	안 제15조(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등)	—	
6	안 제16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	
7	안 제17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8	안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	
9	안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점검·조사)	—	
10	안 제22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	
11	안 제25조(접근성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제품의 보급 등)	—	
12	안 제26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	—	
13	안 제2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4	안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 시행으로 사업 규모가 확대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사업 확대 여부 및 확대 규모를 알 수 없음
15	안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등)	—	
16	안 제32조(포상)	—	
17	안 제34조(국제협력)	—	
18	안 제6조(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미대상 — 안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가재정소요 없이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19	안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회의 구성원의 지능정보기술,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0	안 제10조(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 시행으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가 신규 도입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현 시점에서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지표 마련 및 평가 방법 등 영향평가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가 부재하고,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주기 등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곤란하여 추계에 한계가 있음
21	안 제11조(전문기관)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제정안의 전문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제정안 시행으로 인해 확대될 출연사업의 종류 및 내용 등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22	안 제18조(지능정보서비스 등 이용환경 보장 시책의 마련)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지능정보서비스 등 이용환경 보장과 관련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3	안 제24조(접근성이 보장된 지 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기관등의 장애인·고령자등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를 보장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제품의 종류를 지정·고시하며,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 등을 실시할 경우 이를 위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제정안은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의 검증기준, 검증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24	안 제30조(사회적기업의 지능 정보화 사업 참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국가기관등이 디지털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시책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시책 시행으로 인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할 수 없음
25	안 제31조(재원의 조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 확보와 관련한 일반적인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
26	안 제33조(세제지원)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 촉진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법률에서 정할 감면 관련 규정을 알 수 없음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27	안 제3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 관련 경비가 소요될 수 있지만, 제정안은 위탁과 관련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위탁 대상 기관 및 위탁 업무 등을 알 수 없음
28	안 제5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9	안 제7조(디지털포용위원회)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30	안 제8조(민간의 정책 참여 등)	○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단위: 백만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9조(실태조사 등)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300 － 모바일앱, 키오스크 등 정보접근성 실태를 파악하여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웹접근성 실태조사 : 200 － 국내 웹 접근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성 제고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582 － 국내 웹사이트 현황을 계량적으로 측정, 평가, 분석하여 관련 정책 기초자료 산출	1,082
안 제12조(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300
안 제13조(디지털역량교육의 시행)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교육 센터 운영	27,936
안 제14조(디지털역량센터의 설치 및 지정)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역량 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 키오스크 UI플랫폼 구축·운영	3,518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구축	국가기관등에서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객관성, 신뢰성이 검증된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지식역량 제고	1,947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15조(디지털역량교육 표준교재 등)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1,300
안 제16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운영)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역량 교육 통합플랫폼 운영 - 키오스크 UI플랫폼 구축·운영	3,518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구축	국가기관등에서 생산·보유·관리하고 있는 객관성, 신뢰성이 검증된 국가지식정보를 연계·활용하는 온라인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국민의 지식역량 제고	1,947
안 제17조(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취업연계 교육 - 장애인 집한 정보화교육 -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 장애인 정보화상담실 운영	3,706
안 제19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보장)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역량강화 교육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없이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해 디지털 기본역량 함양을 위한 디지털역량교육 추진 - 디지털 취업연계 교육 - 장애인 집한 정보화교육 - 장애인 방문 정보화교육 - 장애인 정보화상담실 운영	3,706
안 제21조(지능정보서비스 등의 접근성 점검·조사)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	o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300 o 웹접근성 실태조사 : 200 o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 582	1,082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22조(지능정보서비스 및 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조성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 -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4,963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	1,200
안 제25조(접근성기술 연구·개발 및 관련제품의 보급 등)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조성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750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	1,200
안 제26조(지능정보제품의 지원)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조성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 -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4,963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	1,200
안 제27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사업	개요	'24예산
	농어촌주민통신접근권보장	도시와 농촌간 통신 인프라 격차 해소	1,385
안 제28조(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표준화)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 해소 기반조성	-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운영 -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4,963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	1,200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29조(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지정 등)	사업	개요	'24예산
	디지털격차해소 기반조성	디지털 포용 제품·서비스 실증	750
	ICT융합디지털포용기술개발	고령자·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가 신체·인지적 제약을 극복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 영위 및 사회·경제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ICT 융합 기반 디지털포용 기술·서비스 발굴	1,200
안 제32조(포상)	사업	개요	'24예산
	건전정보문화 조성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위해 전국 민을 대상으로 정보문화의 달 지원(내내역 사업으로 '정보문화의 달 운영')	256
안 제34조(국제협력)	사업	개요	'24예산
	개도국 정보이용환경개선사업	개도국의 디지털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해 ICT 교육장, ICT 라운지, 영상회의실 등 ICT 인프라를 구축하고, ICT 콘텐츠를 제공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운영 : 3,496 해외 IT정책결정자 협력 채널 : 400	3,896
	국제기구를 통한 정보화분야 해외진출 지원	주요 국제기구·다자개발은행 협력 기반을 통해 수요국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우리 ICT 기술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고,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서의 글로벌 위상 강화	194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성

- 본 추계에서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조항을 제외하고 안 제5조의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안 제7조의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8조의 민간의 정책 참여 등에 대한 비용을 추계함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 제정안에 따라 정부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하므로, 추계기간 중 2026년과 2029년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디지털포용위원회) 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포용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과반수가 민간위원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민간위원이 15명 위촉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¹⁾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민간의 정책 참여 등) 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등은 민간의 참여 확대와 정책대상의 의견 반영 등을 위해 민간단체 및 지능정보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민간협의체에 민간위원이 13명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회의를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1)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추가 지급할 수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안 제5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정부가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정보사회의 국가발전 전략연구’ 사업(2024년 예산 10억 1,300만원)을 통해 기본계획 등의 수립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5,000만원

[표 3]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기본계획 수립	50	-	-	50	-	100	20

주: 향후 용역 단가의 증감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운영(안 제7조)

- 제정안에 따라 디지털포용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9,000만원(연평균 1,800만원)으로 추계
 - 민간 위원은 15명으로, 회의 참석수당 단가는 30만원으로, 회의 개최 횟수는 연 4회로 가정함

[표 4]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디지털포용위원회 구성·운영	18	18	18	18	18	90	18

주: 향후 실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8조)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8,000만원(연평균 1,600만원)으로 추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사 사례인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당연직 위원 6명, 민간 위촉위원 13명)를 참고하여,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연 4회 회의를 개최²⁾하는 것으로 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참석수당으로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민간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민간협의체 구성·운영	16	16	16	16	16	80	16

주: 향후 실제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따라 추가재정소요 증감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추계가 곤란한 재정수반요인을 제외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이므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2)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최근 1년(2022.7월~2023.6월) 간 4회 출석 회의를 개최하였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